

의안번호	제20호
의결 연월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8월 28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8월 28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조직 축소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구 폐지 : 지청(안 제4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부장, 지청장”을 “부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호 중 “본부·부·지청”을 “본부 및 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조직 및 기구)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.</p> <p>1.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, 본부장, <u>부장</u>, <u>지청장</u>을 둔다.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4. <u>본부·부·지청</u>의 설치와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4조(조직 및 기구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부장</u>-----.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본부 및 부</u>----- -----.</p>

관계 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5조 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 할 수 있다.

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】

제27조의2(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) ① 시·도지사는 제27조·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.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.

② ~ ⑤ (생략)

⑥ 경제자유구역청에는 「지방자치법」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을 둘 수 있다.